

##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으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10. 16 .

#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



- 건 명 :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,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하단 참조

사업장명	사업장 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회수금액	회수사유		
주식회사○루 ○○미 (한○○)	366-86- 02***-0	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3,600,000원	대상 근로자 (강○○) 이직사유 계약만료	폐문부재, 수취인불명	■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생략(1회) 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생략(1회)

4. 공고기간 : 2024. 10. 16. ~ 2024. 10. 30. 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허지원(Tel 02-2142-841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